

동두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6-107
----------	-------

제출년월일 : 2011. 8. .

제출자 : 동두천시장

1. 폐지이유

2007.1.1일자로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대해 세부 평가한 결과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징수 폐지 또는 입장료 징수 방법을 개선하도록 권고 한바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폐지하여 지역주민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동두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환경보호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환경기획팀장 고경희
	담당자 성명 . 전화	주무관 이옥란 860-2243